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AI 방역체계를 「경계」단계로 격상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1.11부로 고병원성 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0.12.29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2011.1.11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하였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기경보단계 :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
→심각(Red)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구제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기로 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1.12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1.13부터 1.27(15일간)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 이는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로 살아 있는 닭·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를 한 후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 토록 하고,
- 닭·오리 도축장(52개소)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조치(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내·외부소독)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하여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가금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하여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과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농가들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사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에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내로 들어가지 말 것과,

-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 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며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1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밖에서 왕겨를 반입할 경우 포대를 재활용 하지 말 것과, 포대를 옮길 경우 바닥에 깔지 말 것, 특히 가금 분뇨를 반출하지 말 것, AI 발생지역의 가금을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신고율 : 2010.5월(48%)→6(70)→7(80)→8(70)→9(68)→10(53)→11(50)→12(74.3)→2011.1,5(97.5)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인 :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실시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설(2.3)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4부터 설 전날인 2.2일(20일간)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꽃감, 대추, 밤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일제단속 기간 중 전반기(1.14~1.23)에는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후반기(1.24~2.2)에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가공품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2가지, 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1가지 품목
- 과자, 빵, 떡류 : 포장하지 않은 것도 포함, 소금·주류를 표시대상에 포함

〈음식점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 품목 : 배달용 닭고기·오리고기 추가, 대상 : 쌀, 배추김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

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참고로 제수용 농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꽃감 등의 원산지 식별방법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 설 제수용품 구매시 참고하면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규정〉

• 거짓표시

- 유통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유통농산물, 음식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식품부 유통복지장관,

전남도청 AI 대책 상황실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유통복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1. 1. 15(토) 전남도청 및 영암군청 AI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계속되는 방역대책 수행으로 지쳐있는 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전남 영암·나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발

생농장 및 가금류 가축에 대한 매몰처리를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야생조류와 가금류가 접촉하지 않도록 농가의 차단방역철저 및 철새도래지 및 농장 주변 주요 도로에 대해서도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WTO/DDA 농업협상, 2011년도 첫 협상 개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DDA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G-20 서울회의, APEC 정상회의 이후 DDA 협상 타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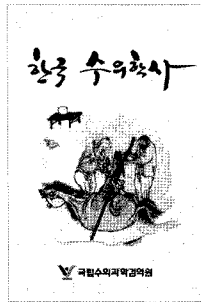
Lamy WTO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DDA를 타결시키기 위한 협상일정을 각 국가들에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어 금년 상반기 중 DDA 협상의 진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DDA 농업협상은 수출국/수입국의 대립에 선진국/개도국의 대립이 더해져 협상진행에 난항이 있어왔다. 이번 회의는 첫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SSM(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단순화 등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대표단 파견하여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 수의학사’ 발간

수의역사 과거에서 미래를 발견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고대 수의학 태동기부터 근대기 (~1962년)까지의 한국 수의역사를 시대별, 사건별로 조명



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수의학사」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출판된 「한국 수의학사」는 원로 수의사인 이시영 선생 (전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장)의 집필 원고를 근간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편집 및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을 보게 되었다. 고대 수의학의 태동부터 시대별, 사건별로 기술한 「한국 수의학사」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적 기록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1장은 고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수의학 발달과정을 기록하였으며, 제2장은 고려시대 수의분야 조직체제와 중국의 영향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 질병발생상황, 주요 수의서적 제4장에서는 대한제국시대 수의현황 제5장은 일제강점기시대 수의업무 마지막으로 제6장은 해방 이후의 수의업무 변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출판은 수의학 역사가 시작되지 반만년, 현대 수의학 도입 100년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담아낸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미진한 부분이나, 동물약품, 실험동물 분야 등 이번에 언급되지 못한 분야와 함께 1962년 이후 현대 수의학에 대한 기록도 꾸준히 수집·관리하여 추가출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수의학사」는 유관기관에 750부 배부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도서관에서 전자책(<http://ebook.nvrgs.go.kr>)으로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책자 배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5회에 걸쳐 개정·고시한

● 정부 및 기관소식

비살균액란 미생물기준 설정, 농축유류 등의 당류 중 올리고당 추가, 생함·발효소시지 유형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강화 및 미생물(여시니아) 시험법 신설 등이 포함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고시) 고시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17일 개정된 기준규격고시의 주요 내용은 유(乳)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조제분유의 세균수 기준을 강화와 축산탈중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 등 현행 축산물 시험방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실험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부 시험법을 개정·보완하였다.

또한,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원료알의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비살균액란의 원료알 구비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발효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관련업계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배포하는 기준규격고시집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생산업체, 행정기관 등의 편리성을 위하여 일반고시집과 휴대용 핸드북, 그리고 시험법을 제외한 축산물의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 부분만을 별도로 제작한 별쇄본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역원은 기준규격고시 책자를 농식품부 소속 기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유관기관 등 160여개 기관 1,300부가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축산물 위생 업무 활용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 '품종통합정보' 서비스 개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은 최근 개발된 품종을 최대한 빨리 입식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의 불만은 원하는 작목의 품종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개발한 모든 품종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품종통합정보 서비스를 오픈했다.

품종통합정보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에서 분산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던 벼, 콩, 사과, 배, 배추 등 총 1,441개의 품종정보를 통합해 서비스한다.

개편된 품종정보는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기능성, 고품질 등의 분류와 품종특징의 간략한 소개 및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방문고객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종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홈페이지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전 농진청 홈페이지의 품종정보에 들어가면 원하는 최신 품종과 과거 모든 품종을 바로 볼 수 있게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이영진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최신 품종정보를 신속히 올려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와 연동 서비스하는 등 품종정보 확산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